

AGENT GUIDE BOOK

시크릿다이렉트코리아 에이전트 가이드북
다단계 판매원 수첩



SEACRET STORY

베일 벗는 시크릿, 그 아름다운 이야기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기 위해 미국으로 이민한 이스라엘 청년, 모티 & 아이작 벤 사바트 형제로부터 시크릿 스토리는 출발합니다. 벤 사바트 형제는 친구들과 함께 키오스크 사업에 도전합니다. 패기 넘치는 젊은 사업가들로 구성된 그들의 사업은 점차 미국 전역으로 확대되며 부의 공유를 실천하는 진정한 공동체의 힘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2005년 벤 사바트 형제는 사업을 한 단계 더 끌어 올립니다. 이스라엘 사해 인근에서 성장하여 누구보다도 사해의 신비한 생명력에 관해 잘 알고 있던 그들은 사해 미네랄 화장품을 개발하여 세계인들과 공유하겠다고 결심합니다. 소매 판매로 시작한 그들의 화장품은 독특한 원료와 첨단 기술력이 호평을 자아내며 세계 각지에서 사랑을 받게 됩니다.

글로벌 무대에서 제품력을 확인한 벤 사바트 형제는 시크릿을 통해 부의 공동체를 실현하겠다는 꿈을 안고 2011년 직접판매업으로도 사업을 확장해 해외 시장 개척에 정성을 쏟습니다.

시크릿은 미국, 멕시코에 이어 2012년에 아시아 최초로 한국에 지사를 설립하였고, 이어서 캐나다(2013), 호주(2014), 일본(2015), 베트남(2019)에 진출하였습니다. 현재 세계 약 40개국에서 소매 및 직접판매를 통해 브랜드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SEACRET ORIGIN

사해의 생명력 | POWER OF DEAD SEA

5,000년 전부터 사해는 힐링과 뷰티의 원천으로 유명합니다. 세기의 미인 클레오 파트라는 사해 미네랄에 매료되어 머드 및 소금을 독점적으로 사용했고, 헤롯왕 역시 인류 최초의 스킨을 사해연안에 짓고 귀족들과 휴양을 즐겼다고 합니다. 사해는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해수면 아래 약 420미터에 위치하며, 세계에서 가장 염도가 높은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해에서 발견되는 미네랄 성분은 수천년의 세월을 거쳐 대자연의 힘으로 생성된 것입니다. 사해에는 마그네슘, 나트륨, 칼슘, 브롬, 칼륨, 철분 등을 포함한 필수 미네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자연과 과학의 만남 | SCIENCE MEETS NATURE

시크릿은 사해의 인문학적 가치와 과학적 분석에 기반한 상용화 방안에 대해 누구보다 깊이 연구해오고 있습니다. 시크릿만의 기술력으로 사해로부터 추출한 각종 이로운 미네랄과 머드, 영양성분을 스킨 및 바디 케어 분야에 적용해오고 있습니다. 사해에 정통한 전문 뷰티 연구를 보유하고 있으며, 세계 최고 수준의 생산라인을 갖추고 있습니다. 세계 유수의 대학교, 연구기관과 제휴를 맺고 오랜 기간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며 실효성을 입증해오고 있습니다.

CONTENTS

- 01 회사 소개
- 03 사업 안내
- 07 회원 활동 법규(윤리강령)
- 24 보상플랜
- 28 에이전트 준수사항
- 31 다단계 판매에 관한 해설 자료
- 33 과대, 과장 광고 금지 안내

이 다단계 판매원 수첩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시크릿다이렉트크리아의 에이전트에게 제공되는 수첩입니다.

MISSION

시크릿의 사명은 독보적인 제품과 혁신적인 기획,
그리고 남다른 기업문화를 통하여 글로벌 부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CORE VALUES

World-class Experience

세계 최고의 고객경험을 제공한다

Become the Product

제품을 생활화하여 스스로 제품 홍보대사가 된다

Embrace Change

변화를 기꺼이 받아들이고 도전한다

Gratitude and Humility

감사, 겸손, 봉사정신을 바탕으로 행동한다

Be Attractive

매력적인 사람이 된다

Love and Respect

애정과 존중으로 소통한다

Empower Through Growth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으로 자신을 무장한다

Family Spirit

행복하고 충성스러운 패밀리 정신을 구축한다

Simple Positive and Fun

늘 단순하고 긍정적이며 즐겁게 생각한다

Create Victory and Celebration

함께 성취하고 서로 축하하는 환경을 조성한다

SEACRET™

사업안내

에이전트 가입

1. 에이전트 가입방법

- ABC(Agent Business Center), 홈페이지(마이오피스), 팩스(02-2222-2929), 메일(infokr@seacretdirect.com)
- 고객센터 : 02-2222-2900

2. 구비서류

- 에이전트 가입신청서, 신분증

우대고객 가입

-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가입가능

주문

1. 운영시간(고객센터)

- 평일 오전 10시 ~ 오후 7시(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휴무)

2. ABC(에이전트 비즈니스 센터) 방문 주문

- 평일 오전 10시 ~ 오후 7시(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휴무)
- 서울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7, 부미크모나코 지층 104호
시크릿다이렉트코리아
Tel : 02-2222-2850
- 대구 :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 521, 동승빌딩 1층 시크릿다이렉트코리아
Tel : 02-2222-2950
- 대전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 50 파이낸스 빌딩 301호 시크릿다이렉트코리아
Tel : 02-2222-2990
- 부산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3로 26, 5층 503호 시크릿다이렉트코리아
Tel : 02-2222-2999
- 광주 :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연하로 16, 스마일 빌딩 3층 302호
시크릿다이렉트코리아
Tel : 02-2222-2940
- 인천 : 인천광역시 부평구 사정로 7, 신라빌딩 5층 502호 시크릿다이렉트코리아
Tel : 02-2222-2890

3. 전화 주문(고객센터)

- 주문 및 상담 전화번호 : 02-2222-2900

4. 인터넷 주문(마이오피스)

- <https://office.seacretdirect.kr>

오토십 프로그램

1. 오토십 프로그램

- 1) 홈페이지 마이오피스에서 오토십 주문을 선택하시면 지정된 주차부터 선택하신 제품에 대해 4주 단위로 자동 결제 및 자동 배송됩니다.
- 2) 오토십 4~12회차에는 제품가격의 DC (5%~10%)가 제공됩니다. (BV/CV 차감없음)
- 3) 오토십 3, 6, 9, 12회차에는 사은품을 증정해 드립니다.
- 4) *100BV 오토십을 신청하신 경우 일반구매 제품에는 금액에 상관없이 무료배송 혜택이 제공되며, 오토십 해지 시 혜택이 소멸됩니다.
- 5) 오토십 13회차에는 결제 금액에서의 50% 할인이 적용되며, 오토십의 종류에 따라 할인 혜택이 제한됩니다.
- 6) 오토십 13회차 결제 후 별도의 해지가 없을 때는 최초 신청 시 선택한 옵션에 따라 최근 구성된 구성품으로 자동연장 됩니다.
- 7) 제품변경, 배송지, 결제정보는 제품이 발송되는 주의 화요일 자정까지 변경할 수 있습니다.
- 8) 오토십 종류
 - 고객맞춤형 오토십 (나에게 맞는 제품 찾기) : 신청자가 선택한 오토십 옵션 및 제품으로 1~13회차가 구성되어 자동결제 및 배송됩니다.
 - 추천형 오토십 : 신청자가 선택한 옵션에 따라 시크릿이 추천하는 제품으로 1~13회차가 구성되어 자동결제 및 배송됩니다.
- 9) 오토십 프로그램은 본인의 자발적인 신청과 동의로 진행됩니다.
- 10) 오토십 주문취소 및 반품 시 오토십이 자동 해지됩니다.
- 11) 윤리경영 위반 시 오토십이 자동 해지될 수 있습니다.
- 12) 오토십 신청주소 오류로 제품이 반송되어 계속된 부재 등으로 확인이 어려운 경우, 반송입고일 기준 5영업일 경과 시 반품 처리되며, 오토십은 해지됩니다.
- 13) 오토십 반품 또는 부분반품 시 사은품 반환이 요구될 수 있으며, 반환이 불가할 시 제품의 정상가격으로 재결제 됩니다.

2. 신청방법

마이오피스를 통해 온라인 신청/변경/해지 가능합니다.

3. 오토십 프로그램 결제 및 배송

- 1) 오토십 결제는 카드 결제로만 가능합니다.
- 2) 오토십은 본인이 신청한 주차로부터 4주 단위로 자동 주문 및 결제되는 형태로서, 주문이 생성될 때 등록하신 정보로 매주 수요일 자동으로 결제 및 배송됩니다.
- 3) 수요일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재결제 시기도되며, 마지막 시에도도 결제 되지 않은 경우 오토십은 해지됩니다.

결제

신용카드, 계좌이체(가상계좌)의 방법으로 제품대금을 결제할 수 있습니다.

1. 신용카드 결제

-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모든 종류의 주문에 대해 결제가 가능합니다.
- 인터넷 주문 시 사용하는 카드 종류에 따라 해당 카드사의 결제절차에 따라서

결제가 이루어집니다.

2. 계좌이체(가상계좌)

- 가상계좌는 고객센터 상담원을 통해 전화주문시 발급되며, 가입된 회원의 연차 처리로 SMS 발송됩니다.
- 가상계좌는 발급된 당일까지만 입금이 가능하며, 당일 미입금시 당사 고객센터 상담원을 통하여 다시 가상계좌발급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가상계좌로 당일 입금하면 주문처리가 완료됩니다.

배송

모든 주문은 택배로 배송되며, ABC에서의 직접 픽업도 가능합니다.(일부상품제외) 하이퍼마켓 제품의 경우, 업체에서 제품을 택배로 배송합니다.

1. 배송비

- 시크릿다이렉트코리아에서 판매하고 있는 모든 제품의 합계 구매액이 50,000원 이상일 경우에는 무료로 배송됩니다. 만일 합계 구매액이 50,000원 미만일 경우에는 배송비 3,000원을 별도로 지불해야 합니다. 하이퍼마켓 제품의 경우, 제품 특성에 따라 배송비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무료로 배송된 제품에 대해 반품시에는 무료혜택이 소멸되어 배송비가 청구될 수 있습니다.

2. 제품 수령 확인

- 주문 제품 수령시 구매계약서, 품명, 수량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품 수령시 제품이 파손되었거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수령일로부터 7일 내에 고객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제품 수령시 확인사항 안내' 인쇄물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회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반품 및 환불

1. 소비자 반품(우대고객 포함)

소비자의 구매 불만에 대하여 제품 구매대금을 환불하거나 교환하는 것은 판매한 에이전트의 책임입니다. 소매 판매의 경우 소비자는 판매자로부터 교부 받은 소매영수증으로 청약 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 반품의 청약 철회 기간은 계약서 교부일로부터 14일, 재화 공급이 늦어진 경우는 공급개시일로부터 14일까지입니다.

2. 에이전트 반품

에이전트가 재판매 가능한 상태의 제품을 반품하는 것으로서 제품인도일로부터 3개월까지만 가능합니다. 제품공급 후 반품 시까지 경과 기간에 따라 하기의 공제 비용이 부과됩니다.

- 1개월 이내 : 재화대금의 0%
- 1개월 경과 ~ 2개월 이내 : 재화대금의 5%
- 2개월 경과 ~ 3개월 이내 : 재화대금의 7%

3. 반품 시 제한사항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아래사항의 경우 반품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재고의 보유를 허위로 알리는 등의 방법으로 재고를 과다하게 보유한 경우
 - 다시 판매하기 어려울 정도로 재화등을 훼손한 경우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1) 소비자나 단단계판매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재화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 2) 재화등을 사용하거나 일부 소비하여 그 가치가 현저히 낮아진 경우
 - 3) 시간의 경과에 따라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제품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4) 복제할 수 있는 재화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 5) 소비자 또는 단단계판매원의 주문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등에 대한 것
 - ※ 반품요청자의 귀책사유(비정상적인 반품접수, 연락두절, 부당한 요구, 입금지 연 등)에 의해 접수된 반품건은 제한되거나 불가할 수 있습니다.
 - ※ 트러블 반품요청시 증빙사진, 진료확인서, 체크리스트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 사은품이 포함된 재화 등에 대한 청약 철회시 사은품은 반환되어야 하며, 반환 불가시 해당 제품에 대한 비용이 청구됩니다.
 - ※ 본인 구매 제품 이외의 반품은 불가하며 본인에게 출고된 제품의 바코드와 일치해야 반품이 가능합니다.
 - ※ 제품별 제공된 케이스가 멸실된 경우 반품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4. 환불

반품접수 기준일은 청약 철회에 대한 상담(기간경과에 따른 공제비용, 배송비, 반품형태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재승인금액등에 대한 결제완료)후 재화를 반환 받은 날이며 3영업일 이내에 환불됩니다. 최초 구매방법에 따라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카드승인이 취소 처리되고, 가상계좌로 입금한 경우 가입된 은행계좌로 입금처리 됩니다. 단, 공제금액 등이 발생한 경우 해당금액을 카드결제 또는 가상계좌 입금 확인 후 카드승인 취소 또는 가입된 은행 계좌로 입금됩니다. 할인 및 불물입이 적용된 팩 제품의 부분 반품시 할인 또는 불물입의 혜택은 소멸되며, 미 입고된 제품은 회원 가격으로 재결제 후 원 주문은 전체 취소됩니다.

5. 반품절차

- 1) 회원 본인이 고객센터를 통해 반품신청을 합니다.
 - ※ 전화: 02-2222-2900(인내 멘트 후 4번)
- 2) 반품신청시 회원정보, 주문번호 확인 후 제품회수 정보(회수주소, 성명, 연락처)를 알려줍니다.
- 3) 요청한 회수주소로 택배사원이 방문하여 회수합니다. 하이퍼마켓 제품의 경우, 업체별 택배사 및 회수방법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4) 회수된 제품이 입고후 재결제 금액이 없을 경우 3영업일 이내 반품 처리되며, 반품품처리 완료 내역이 SMS로 발송됩니다.
- 5) 기간 경과에 따른 공제 비용, 초기 배송비, 반품 형태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재결제 금액 발생 시 반품 담당자가 별도 연락하며, 발생된 금액은 재결제 후 원승인 내역은 전체 취소됩니다.
- 6) 오토신 제품을 반품할 경우, 오토신은 자동 해지됩니다.

SECTION 1. 개요

- 1.1 계약
- 1.2 관련 법령 속지 및 준수

SECTION 2. SA 가입

- 2.1 가입신청
- 2.2 가입 자격
- 2.3 가입신청 승인
- 2.4 가입국가 및 변경
- 2.5 부부사업자
- 2.6 SA 정보 변경
- 2.7 추천인/후원인 지정
- 2.8 재가입
- 2.9 승계
- 2.10 자격 심사
- 2.1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 2.12 SA의 독립성 및 자율성

SECTION. 3. 주문 및 수당

- 3.1 부정 주문
- 3.2 제품 변경 금지

SECTION 4. 후원 수당

- 4.1 후원 수당 정의 및 수령조건
- 4.2 후원 수당 정산
- 4.3 보상물건의 악용 및 사행적 매출 금지
- 4.4 과다재고보유행위
- 4.5 과다재고 보유행위를 통한 지급
 - 달성 및 보너스 수령
- 4.6 반품에 따른 후원 수당 등의 조정
- 4.7 후원 수당 확인 의무

SECTION 5. 마케팅 활동

- 5.1 마케팅 원칙
- 5.2 허위과대과장광고 금지
- 5.3 불특정인 대상 광고 금지
- 5.4 서비스 관련 사업장
- 5.5 지적재산권
- 5.6 판매보조물품
- 5.7 인터넷 비즈니스

SECTION 6. 후원 활동

- 6.1 후원 의무 및 책임
- 6.2 지속적인 후원 의무 및 책임
- 6.3 수입 및 사업기회에 대한 주장 금지
- 6.4 동종업계 유인행위 금지
- 6.5 경쟁사 제품 또는 서비스의 판매 금지
- 6.6 라인(추천후원) 변경 금지
- 6.7 시크릿을 이용한 별도의 영리활동 금지
- 6.8 마이오피스 활용
- 6.9 글로벌 비즈니스

SECTION 7. 기타 SA 준수사항

- 7.1 부당한 강요 또는 허위사실 유포 금지
- 7.2 업무방해 금지
- 7.3 시크릿 관계자 접촉 금지
- 7.4 권한 없이 시크릿을 대표하는 행위
- 7.5 사행적 판매원 확장 행위
- 7.6 반품방해 금지
- 7.7 비밀공개 금지
- 7.8 품위 및 명성 유지
- 7.9 공식행사 규정 준수

SECTION 8. 계약해지

- 8.1 자발적 계약해지
- 8.2 비자발적 계약해지
- 8.3 계약해지의 효과

SECTION 9. 징계

- 9.1 징계의 정의
- 9.2 징계의 종류 및 효력
- 9.3 징계위원회 설치 및 구성
- 9.4 징계위원회 회의
- 9.5 위반사실 조사
- 9.6 징계의결
- 9.7 집행 및 통지
- 9.8 재심
- 9.9 징계 권한

SECTION 10. 일반 규정

- 10.1 적용법규 및 관할

SECTION 1.

개요

1.1 계약

시크릿다이렉트코리아 회원 활동 법규는 시크릿다이렉트코리아(이하 '시크릿')와 적법하게 승인된 시크릿 에이전트(이하 'SA')간의 SA 가입 및 사업활동시 요구되는 여러 구체적인 방침 및 절차를 명시한 것이다.

SA는 시크릿 회원 활동 법규 및 사업과 관련된 법률에 따른 책임을 다하고 이를 실천하여야 하며, 진실하고 정직한 태도로 시크릿 제품과 서비스 및 사업 기회를 제시해야 한다. 시크릿은 고유의 권한으로 계약, 규정 및 정책을 개정할 권리가 있고 변경 또는 개정될 내용은 시크릿의 공식 웹사이트, 이메일, 시크릿 매거진, 서면(전자서면) 등으로 전달되며, SA는 개정된 내용에 대해 숙지하고 이에 따른다.

1.2 관련법령 숙지 및 준수

SA는 시크릿의 회원 활동 법규 및 사업과 관련된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

특히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 화장품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하 '건강기능식품법'),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하 '식품표시광고법')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할 의무가 있다.

만일 이를 준수하지 않아 민원 또는 법정분쟁이 발생할 경우 시크릿은 SA에 대해 조사 및 징계의 권한이 있다.

SECTION 2.

SA가입

2.1 가입신청

SA가 되기 위해서는 현재 승인된 SA의 후원을 받아 'SA 가입신청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한 후 시크릿에 승인을 요청해야 한다. 'SA 가입신청서'에는 가입자 본인의 정확한 정보가 기재되어야 한다. 온라인 가입자는 가입이 승인된 날로부터 2달 이내에 본사 또는 ABC센터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2 가입 자격

가. 민법상 성년의 내국인(우대고객 포함)

나. 거주비자 F2(거주), F4(재외동포), F5(영주), F6(결혼, 이민), D8(외국인 투자), D9(무역 경영)를 가진 자

※ 합법적 거주비자를 가진 외국인인은 오프라인 가입만 가능하며 체류만료일이 4개월 이상인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체류만료기간 연장시 당시에 연락하여 갱신하여야 하며 미갱신시 SA자격은 해지된다.

다.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SA로 가입할 수 없다.

- ① 미성년자, 공무원, 군인, 교원, 법인, 단체, 다단계판매업자 지배주주 또는 임직원
- ②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 또는 자신의 업무를 논리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등을 갖추지 못한 자
- ③ 복역 중이거나 교도기관에 수감중인 자

④ 방문판매법 위반으로 시정조치를 2회 이상 받거나, 실형의 집행종료 또는 집행면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또는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⑤ 회원 활동 법규를 위반하여 SA 자격이 해지된 자

⑥ 허위의 정보로 가입하였거나 민원 발생의 우려가 있는 자

⑦ 기존 SA로서 탈퇴 전 지급에 따른 비활동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자

라. 한 명의 SA는 단지 하나의 시크릿 사업만을 운영하거나 소유할 수 있으며 차명(배우자, 자녀, 친지 혹은 제3자 이름 등)으로 가입할 수 없다.

2.3 가입신청 승인

가. SA 가입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는 시크릿의 전적인 권한이며 시크릿은 가입 신청의 승인 또는 거부에 대하여 이유를 설명하지 않을 수 있다.

나. 시크릿은 SA 가입신청을 승인하는 경우 SA번호와 SA가입증 및 SA수첩을 발급하며 신청자는 시크릿의 승인이 완료된 시점부터 SA로서 유효하게 활동할 수 있다.

2.4 가입국가 및 변경

가. SA는 본인이 거주하는 국가에서 SA가입을 할 수 있다. 시크릿의 요구시 SA는 기재된 국가에 거주하며 합법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나. SA가 가입된 국가를 변경하려면, 변경하고자 하는 국가에 신청 및 심의를 거쳐야 하며, 년 1회에 한해 가능하다.

2.5 부부사업자

가. 부부사업자의 가입 및 지위

① 법적 부부는 하나의 SA 자격만을 가질 수 있다. 한 배우자가 이미 SA로 가입된 경우 SA 가입을 희망하는 미가입 배우자는 부사업자로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가입을 희망하는 부사업자가 가입 자격이 없거나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시크릿은 가입을 거부할 수 있다.

② 가입된 SA가 법적 부부가 될 경우 한 명의 SA는 기존의 지위를 포기하고 부부사업자로 가입할 수 있다. 다만 각각의 지위로 활동할 경우 기존의 SA 지위가 인정되며 부부사업자에게 주어지는 각종 혜택은 받을 수 없다.

③ 부부사업자 중 주사업자는 시크릿으로부터 각종 정보 및 통지, 후원 수당을 받을 자격이 주어지며, 부사업자가 탈퇴 후 재가입할 경우 6개월 이후에 할 수 있다.

나. 부부사업자의 책임

① 부부사업자는 주/부사업자 모두 후원 의무를 진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시크릿은 주/부사업자에게 주어지는 혜택을 제한할 수 있다.

② 회원 활동 법규 위반에 대한 조치는 부부사업자 모두에게 효력을 미친다. 다만, 주/부사업자 한쪽의 책임이 명백한 경우, 개별적으로 징계할 수 있다.

③ 미가입 배우자가 시크릿 사업과 관련된 행위를 할 경우 가입한 SA의 요청이 승인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하며, 미가입 배우자(부사업자 탈퇴 포함)가 회원 활동 법규 및 시크릿의 각종 정책을 위반한 경우, 가입한 SA에게 책임이 있다.

다. 시크릿 사업의 분리

① 부부사업자가 이혼하는 경우 누가 SA 지위를 유지할 것인지 시크릿에 통보 해

아 한다. 통보하지 않을 경우 주사업자가 원칙적으로 해당 SA 지위를 갖는다.

- ② 이혼하는 부부사업자의 하위조직은 양분되지 않으며 시크릿의 수당이나 각종 혜택을 나누어 지급받을 수 없다.
- ③ 이혼 등으로 SA지위에 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시크릿은 분쟁 종결시까지 SA의 지위 및 수당이나 보너스를 정지 또는 해지할 수 있다.
- ④ 이혼 후 배우자 한쪽이 시크릿 사업에 대한 모든 권리를 완전히 완전히 포기한 SA는 즉시 원하는 라인의 신규 SA로 가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종전의 지위는 인정되지 않는다.
- ⑤ 시크릿은 SA사업의 분리시 해당 SA의 수당과는 별도로 직급(지위)과 관련 해서 는 심의를 거쳐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2.6 SA 정보 변경

SA는 회원정보(주소, 연락처, 계좌번호, 이메일 등)가 변경된 경우 시크릿에 통보 하거나 마이오피스에서 수정하여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해당 SA에게 있다.

2.7 추천인/후원인 지정(다이렉트 보너스 추천인 포함)

- 가. 신규 SA에 대하여 추천인/후원인의 분쟁이 발생한 경우 시크릿은 적법하게 먼저 접수된 건을 기준으로 한다.
- 나. 추천인/후원인 지정과정에서 실수가 발생한 경우 5영업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정정할 수 있다.
- 다. 지정된 추천인/후원인의 탈퇴 및 기타 사유로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시크릿 권한으로 변경할 수 있다.
- 라. 시크릿은 추천인/후원인 변경에 대하여 전적인 권한을 가지며 SA는 그 결정에 대하여 다툴 수 없다.

2.8 재가입

가. SA는 비활동 기간(최종주문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시 소비자회원(우대고객)으로 전환되며, SA자격이 소비자회원으로 전환된 이후에는 새로운 SA로 재가입 할 수 있다.

* '직급별 비활동 기간'

탈퇴 전 직급	비활동 기간
다이아몬드 이상	1년
다이아몬드 미만	6개월

- 나. SA가 비활동기간 경과로 인해 소비자 회원으로 전환된 경우 종래 실적은 소멸(SA 복원불가)되고 종래의 추천인의 다이렉트 보너스 트리로 이전된다. 또한 예전 본인의 하위 SA는 원래의 후원인 라인에 남게 된다.
- 다. 비활동 기간에는 '건전한 지위(Good standing)'를 유지하여야 한다. '건전한 지위'란 의도적인 단체 탈퇴, 단체 반품, 단체 재가입, 타사활동, 회사 또는 SA간 비방/비난 등의 행위를 하지 않는 것으로서 이를 어길 경우 재가입은 거부된다.
- 라. 재가입에 대한 승인 여부는 시크릿의 전적인 권한이며 시크릿은 승인 또는 거부에

대하여 설명할 의무가 없다. 시크릿에 채무가 있는 자, 회원 활동 범규 위반으로 직권해지 된 자가 재가입 요청시에는 별도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사안에 따라 거부될 수 있다.

- 마. 비활동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회사 내부 협의에 의해 재가입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
- 바. 비활동기간에 배우자, 부모, 자녀, 기타 제3자의 이름으로 가입 및 활동한 경우에는 2.2(SA가입 자격) 규정 위반으로 간주된다.

2.9 승계

- 가. SA지위의 승계는 법률상 사망으로 인한 상속의 경우에만 가능하며 이전(양도, 양수) 할 수 없다.
- 나. 상속신청을 하는 경우 사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적법한 자료를 시크릿에 제출하여야 한다.
- 다. 이 기간 내에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시크릿은 사망한 SA와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라. 상속인은 SA지위의 상속을 신청하는 시점에 SA가입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기존 SA가 상속받는 경우 기존 SA 지위를 탈퇴하여야 한다.
- 마. 상속에 분쟁이 있는 경우 시크릿은 분쟁 종결시까지 SA의 지위 및 수당이나 보너스를 정지 또는 해지할 수 있다.
- 바. 상속인은 상속에 따른 모든 책임과 의무를 진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채무가 있을 시 변제하여야 한다.
- 사. 상속인은 단 1명만 허용되며 법적 상속인이 복수인 경우 나머지 법적 상속인의 승계포기서를 제출해야 한다.
- 아. 시크릿을 기만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상속을 승계하려고 하였거나 승계한 경우, 시크릿은 SA 지위를 정지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 자. 시크릿은 승계에 대하여 전적인 권한을 가지며 직급(지위)과 관련해서는 심의를 거쳐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2.10 자격 심사

시크릿은 SA(가입(재가입), 승계(상속), 주/부사업자, 국적, 추천인/후원인 등 각종 변경에 대하여 민원인력이나 직급등을 고려하여 시크릿 교육의 권한으로 자격심사를 할 수 있다.

2.1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 가.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은 시크릿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른다.(홈페이지 참조)
- 나. 시크릿은 관련법령에 따라 과세목적을 위해 후원 수당이 발생한 SA의 고유식별정보(주민가입번호)를 수집할 수 있다. 만약 미제출로 인해 세금신고가 불가능한 경우 시크릿은 해당 SA의 후원 수당을 지급보류 할 수 있다.

2.12 SA의 독립성 및 자율성

가. SA는 독립계약자 신분이며 시크릿과 노사관계, 대리징, 동업 혹은 합작투자 관계를 형성하지 않는다. SA는 본 회원 활동범규와 절차 및 관계 법령을 준수하며 자신의 영업을 독립적으로 운영한다.

- 나. SA 가입은 철저히 본인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임의로 SA로 가입시키거나 정보변경, 또는 탈퇴 신청을 해서는 안 된다. 타 SA에 대해서 일정수의 SA 후원이나 일정량의 제품구매 또는 재고보유를 강요하여서는 안 되며, 사업설명회 등의 행사 참여는 전적으로 SA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다. SA는 시크릿의 독립적인 사업자임을 나타내는 명칭과 상호를 사용하여야 한다. 명칭은 시크릿에서 공식적으로 제공하는 자료를 다운로드하여 사용 가능하며 당시의 임직원, 대리인으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예: 본부장, ABC센터장, oo지역센터장 등)
- 라. SA는 각 직급별로 시크릿이 마련한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할 수 있으며 이를 이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시크릿이 책임지지 않는다.

SECTION 3

주문 및 수당

3.1 부정 주문

- 가. SA는 무단으로 타인의 개인정보 및 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주문할 수 없다.
- 나. SA는 결제수단 및 제품구매내용(구성제품, 배송주소 등)을 임의로 변경하여 주문하여서는 안 된다.

3.2 제품 변경 금지(소보 및 재포장 금지)

- 가. SA는 제품의 내용물, 라벨, 포장 등을 추가, 변경 또는 제거하여 판매할 수 없다.
- 나. SA는 재판매를 목적으로 구입하는 자에게 시크릿 제품을 공급해서는 안 된다.

SECTION 4

후원 수당

4.1 후원 수당 정의 및 수령조건

- 가. 후원 수당이란 보너스, 승급, 인센티브여행 등 모든 혜택을 말한다.
- 나. 보상플랜 및 프로모션에 따른 후원 수당 등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각 내용에서 정한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4.2 후원 수당 정산

- 가. 후원 수당은 SA와 해당SA의 하위조직에서 발생한 매출을 기준으로 매주 산정된다.
- 나. 시크릿은 방문판매법에 따른 후원 수당 초과지급 금지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후원 수당 지급 총액을 조정할 수 있다.

4.3 보상 플랜의 악용 및 사행적 매출 금지

- 가. SA는 보상플랜의 조건을 준수해야 하며 타인의 명의, 개인정보, 인증번호 등을 사용할 수 없고, 지급을 유지하기 위해 보상플랜의 취지나 목적, 조건 등에 반하여 보상플랜을 악용하여서는 안 된다.

- 나. SA는 시크릿의 보상&마케팅 플랜 이외의 프로모션을 시행하여서는 안 된다.
- 다. SA는 후원 수당만을 목적으로 제품을 구매하여서는 안 된다.
- 라. SA는 허위매출(후원 수당 수령 후 의도적 반품행위 등) 또는 대량반품 등을 하거나 또는 이러한 행위에 대해 아무런 조치없이 방관하여 시크릿에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
- 마. 본 규정에 위반되거나 위반될 우려가 있는 경우, 시크릿은 매출취소, 후원 수당 박탈, 법적 조치 등을 포함하여 그러한 행위를 방지하는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모든 조치(징계 포함)를 취할 수 있다.

4.4 과다재고 보유행위

- “과다재고 보유행위”는 SA의 빠른 지급 달성을 위해 과다로 재고를 보유할 때 발생하며, 어떠한 경우라도 금지되어 있다. 과다재고 보유행위는 다음과 같다.
- 가. 본인의 하위조직에 신규 SA를 가입시킨 후 급진적인 지원을 통하여 시크릿의 지급 및 보상플랜 보너스 수령 조건을 비정상적인 시간 내에 달성한 경우
- 나. 본인의 하위조직에 신규 SA 가입을 통하여 시크릿의 보상플랜을 악용하고자 하는 경우

4.5 과다재고 보유행위를 통한 지급달성 및 보너스 수령

- 가. 동의 없이 얻은 개인 정보를 이용하여 SA 또는 우대 고객으로 가입시키는 경우
- 나. 부정적인 경로를 통하여 얻은 개인 정보를 이용하여 SA 또는 우대 고객으로 가입시키는 경우
- 다. 허위 정보(주소, 연락처 등)로 SA 또는 우대 고객으로 가입시키는 경우
- 라. 커미션 또는 보너스 수령 조건 그리고 지급 달성 및 유지 등을 목적으로 본인 하위 조직에 가입된 다른 SA 또는 우대고객의 명의로 제품 및 아이템들을 구매하는 경우
- 마. 본인의 사용 목적이 아닌 새로운 지급, 유지, 프로모션, 커미션, 보너스 조건 달성 또는 그 어떠한 방법으로 이를 달성하고자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 바. 그 어떠한 방식/방법 등을 통하여 본인의 사용 목적이 아닌 지급, 프로모션, 커미션, 보너스 등 만을 목적으로 구매하는 경우
- 사. 위 항목에 해당하는 행위가 발견/적발된 SA는 시크릿 방침 및 절차에 따라 제재를 받게 되며 조사 결과에 따라 후원 수당 환수 조치 또는 자격정지/자격제한/직면해지 될 수 있다. 제재를 받는 SA는 종료시까지 리더십 보너스 및 여행 프로모션 등에 참가할 수 없다.

4.6 반품에 따른 후원 수당 등의 조정

- 가. 제품이 반품된 경우 해당 매출에 의한 후원 수당은 반품이 반영된 실제 매출로 조정된다.
- 나. 수당수령 후 반품으로 반환해야 할 수당이 있는 경우 추후 발생하는 수당에서 먼저 차감된다.
- 다. 탈퇴, 장기간 수당 미발생 또는 중대한 사유로 수당을 즉시 회수해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 시크릿은 수당의 반환 및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4.7 후원 수당 확인의무

- 가. 후원 수당에 대하여 의문 또는 착오가 있는 경우 수당 지급일로부터 30일 이내 시크릿에 통지해야 한다.

나. 시크릿이 보상플랜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법률에 따라 반환 청구하거나 추후 발생할 수당에서 차감할 수 있다.

SECTION 5

마케팅 활동

5.1 마케팅 원칙

- 가. SA는 시크릿,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유지하고 홍보해야 한다.
- 나. SA는 시크릿이 제공하는 마케팅 도구 및 지원자료 만을 사용한다.
- 다. SA는 마케팅활동에 사전승인이 필요한 경우, 시크릿에 서면으로 요청한다.
- 라. SA는 시크릿의 사전승인 없이 간행물, 광고, 영업관련 물품, 홍보 자료, 또는 인터넷 웹페이지 등을 제작해서는 안 된다.
- 마. SA는 비공식, 미확인 또는 허위정보를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 바. SA는 사행성을 조장, 또는 조장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 사. SA는 특정지역에 대한 독점적 권리 또는 권한을 주장하여서는 안 된다.

5.2 허위과대과장광고 금지

- 가. SA는 제품을 설명할 때 아래의 예시를 포함하여 화장품법, 건강기능식품법, 식품 표시광고법 등 관련 법규에 위배될 수 있는 어떠한 주장이나 언급도 할 수 없다.
 - ①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
 - ②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내용
 - ③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내용

5.3 불특정인 대상 광고 금지

- 가. SA는 시크릿의 사전승인 없이 불특정인들을 상대로 대중매체(인쇄물, 현수막, 인터넷, 전화, 문자메세지, SNS, 인터넷 등)를 이용한 광고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나. SA는 시크릿이 승인하지 않은 자료 및 행사 등을 무단으로 촬영, 녹음, 게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5.4 서비스 관련 사업장

- 가. 시크릿 제품의 전시, 판매홍보 및 사업설명은 시크릿의 사전승인 받은 장소와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금지 예시: 프랜차이즈, 행사장, 시장, 차량, 노점 및 타 영업시설)

5.5 지적재산권

- 가. 시크릿 상표, 제품명, 기장, 로고, 디자인 및 기타 재산권은 시크릿에 있다.
- 나. "SECRET"이라는 표현의 사용은 엄격히 금지되므로, 개인사업체(사업명)의 일부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 시크릿의 명칭 로고를 임의로 건물외벽 및 차량에 부착하여서는 안 된다.
- 다. SA는 사전승인을 받아 시크릿에서 제공된 자료만을 사용할 수 있으며, 시크릿이 지적재산권의 소유권자임을 반드시 밝히어야 하고 자료의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안 된다.

라. 시크릿은 지적재산권을 무단사용 및 변경하는 자에게 사용중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5.6 판매보조물품

- 가. 판매보조물품이란 책자, 인쇄물, 음성 또는 영상제작물,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자료, 상품 보조용품, 어플리케이션 및 기타 전자 매체, 샘플제작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판매보조물품을 말한다.
- 나. 시크릿의 사전승인 없이 일체의 판매보조물품을 제작, 사용 및 판매할 수 없다.
- 다. SA는 판매보조물품을 시크릿의 공식제작물로 오인할 수 있게끔 하여서는 안 되며, 개인 제작물임을 밝혀야 한다.
- 라. 시크릿은 SA가 제작한 판매보조물품이 관계법령 저촉 및 시크릿 이미지 훼손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제작 및 판매유동의 중지 지시 및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5.7 인터넷 비즈니스

- 가. 인터넷 비즈니스란 인터넷 홈페이지, 인터넷 커뮤니티, SNS, 문자 메시지 및 이와 유사한 방식의 온라인 또는 모바일 서비스 일체(이하 '웹사이트')를 사용하여 시크릿과 관련된 내용을 게시 및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
- 나. 웹사이트 제작 및 운영
 - SA는 시크릿의 사전승인 없이 웹사이트를 제작 및 운영 할 수 없다. 웹사이트에는 SA 개인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임을 명시하여야 한다.(“본 페이지는 시크릿다이렉트코리아와는 무관한 개인홈페이지입니다.”)
- 다. SA는 다음과 같은 행위가 금지된다.
 - ① 시크릿이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행위
예) (시크릿, SEACRET DIRECT, 시크릿다이렉트 등)웹사이트의 명칭, 이메일 주소 및 창업주 및 임직원명, 임직원으로 오인할 수 있는 내용 게시
 - ② 공식 웹사이트보다 먼저 검색되게 하는 행위
 - ③ 온라인 회원가입 접수 및 제품판매 행위(예: 소핑몰, 오픈마켓, 중국나라 등)
 - ④ 시크릿사업과 무관한 상업적 이익을 취하는 행위
 - ⑤ 본인 및 타인의 마이오피스 계정정보, 수단, 실적(접수) 등의 노출

SECTION 6

후원 활동

6.1 후원 의무 및 책임

- 가. SA는 하위SA가 회원 활동 법규 및 보상플랜에 따라 건전하고 장기적으로 사업을 성장시킬 수 있도록 적절한 후원과 교육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 나. 일정직급 이상의 SA는 제품 및 회사에 대한 본인의 노하우를 신규 SA에게 전달, 교육할 의무가 있다.
- 다. SA는 자신의 하위SA가 제품이나 사업 등에 대하여 부적절 또는 불법적인 행위를 하지 않도록 교육하여야 한다. 시크릿은 상위SA의 책임이 있으면 회원 활동 법규에 의한 제재를 할 수 있다.
- 라. 시크릿이 제공하는 정보와 다른 정보를 제공하거나 교육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해당 SA가 책임을 진다.

6.2 지속적인 후원 의무 및 책임

- 가. SA는 제품 및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기존고객 관리 및 신규고객을 창출하고, 적절한 후원과 교육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 나. 시크릿은 SA가 실제 후원활동을 하지 않고 후원 수당만을 수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SA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 다. 특히 상위 직급자(다이아몬드 이상)가 정당한 사유없이 실제 후원활동을 하지 않는다고 판단시 시크릿은 중대한 회원 활동 벌규 위반으로 징계할 수 있으며, 다이아몬드이상 직급인정 프로그램에서 제외된다.
- 라. 상위 직급자(다이아몬드 이상)는 다음을 수행하여야 할 책임이 주어진다.
- ① 그룹내 SA들에게 동기부여 및 교육을 위한 정기적인 미팅을 개최하거나 그러한 미팅의 참석기회를 제공하고, 교류를 유지한다.
 - ② 각종 세미나, 컨벤션, 직급자회의 등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참석하여야 한다.
 - ③ 후원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SA에게 서면을 발송시 성실히 소명하고 개선하여야 한다.
 - ④ 후원활동 없이 수당을 수령할 수 없으며, 시크릿 제품과 서비스를 고객에게 알리고 판매하여야 하며, 신규 추천인 가입 등과 같은 실질적인 활동을 하여야 한다.

6.3 수입 및 사업기회에 대한 주장 금지

- 가. SA는 수입이나 잠재적소득에 대해서 부당, 과장, 허위사실을 설명 또는 주장해서는 안 된다. 수당 또는 실적 등 이와 유사한 자료를 공개, 제시하는 것도 금지된다.
- 나. SA는 지속적으로 시크릿 제품을 판매 및 일정한 자격을 유지하여야 소득 또는 후원 수당 등의 경제적 이익이 실현됨을 설명해야 한다. 단지 후원은 행위 또는 노력 없이 위와 같은 혜택을 보장하는 주장을 하여서는 안 된다.

6.4 동종업계 유인행위 금지

- 가. SA는 시크릿 이외의 다른 직점판매, 단건제 또는 가상화폐 등의 불법적인 사업 권유나 판매방식이 유사한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이는 본인의 명의로 아니라 차명(배우자, 부모, 형제 등의 가족, 지인 등)을 이용한 가입 및 활동 전부를 포함한다.
- 나. 다른 SA나 고객을 직간접적으로 권유 또는 유인하는 일체의 행위 및 허위판매원의 반쯤을 유도하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된다.
- 다. SA는 유인 등 부정한 목적으로 시크릿의 기밀정보를 사용 또는 공개할 수 없으며, 시크릿을 비방, 유언비어, 허위사실을 유포해서는 안 된다.
- 라. 본규정을 위반하거나 위반하려는 경우 시크릿은 사전 통보 없이 SA지위를 정지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6.5 경쟁사 제품 또는 서비스의 판매 금지

SA는 시크릿 이외의 제품 또는 서비스를 판매하거나 판매하려 시도해서는 안 된다. 또한 시크릿과 경쟁사의 홍보자료, 영업자료, 제품 혹은 서비스를 함께 동일한 장소에서 전시 및 홍보해서는 안 된다.

6.6 라인(추천,후원)변경 금지

가. SA는 다른 SA로 하위급 라인을 변경하도록 권유, 유도, 혹은 방조할 수 없다. 이는 기존 라인을 해체시키고 다른 라인에 재가입을 하도록 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

(금전적 혹은 유·무형의 인센티브 제안 등)

나. 시크릿이 부적절한 라인변경이라고 판단한 경우 관련된 SA에게 회원 활동 벌규에 따른 제재를 할 수 있다.

6.7 시크릿을 이용한 별도의 영리활동 금지

가. 별도의 영리활동은 아래와 같다.

- ① 가맹비, 인테리어비, 물품 구매비, 교육비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것
- ② 프랜차이즈의 운영 또는 참가
- ③ 시크릿의 사전 서면 승인을 받지 않은 판매 보조용품 등의 제작·배포 및 판매
- ④ 기타 미승인된 모든 경제적 이익활동을 말한다.

나. SA는 시크릿의 사업기회, 상품, 지적재산권 등을 이용하여 별도의 영리 활동을 할 수 없다. 다. 시크릿은 본 규정에 해당하는 별도의 영리활동여부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으며, 위반하는 경우 회원 활동 벌규에 따른 제재를 할 수 있다.

6.8 마이오피스 활용

- 가. 시크릿은 SA에게 회원활동 관련된 모든 정보, SA공지사항, 수당관리 및 제품주문 등의 서비스를 마이오피스를 통해 제공한다.
- 나. SA는 시크릿 사업 활동을 위한 목적으로만 마이오피스를 사용하고 본인의 계정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 다. SA는 다음과 같은 행위가 금지된다.
- ① SA는 본인 또는 다른 SA의 마이오피스 계정, 개인정보, 활동내용 등을 제3자에게 직, 간접적으로 공개 또는 공유하는 행위
 - ② 마이오피스를 이용하여 사형성을 조정하는 행위(수당 및 실적(BV,CV) 공개등)
 - ③ 마이오피스를 시크릿 사업이외의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 라. 본 규정에 위반되거나 위반될 우려가 있는 경우, 시크릿은 회원 활동 벌규에 따른 마이오피스 이용 제한을 할 수 있다.

6.9 글로벌 비즈니스

- 가. SA는 시크릿의 공식 진출국가에 한하여 시크릿 사업활동을 할 수 있으며 해당국가의 회원 활동 벌규 및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 나. 시크릿은 공식적으로 진출하지 않은 국가에서 사전 마케팅을 금지하며, SA는 참석자수가 5명을 초과하는 세미나 개최, 주관, 참석하는 등의 활동을 할 수 없다.
- 다. SA는 시크릿의 제품, 마케팅 및 보상플랜 자료를 한국 이외의 국가에 직간접적으로 제작, 판매, 배포하여서는 안 된다.
- 라. SA는 본인이 가입된 국가에서 구매한 상품을 가입된 국가 이외의 국가에서는 판매할 수 없으며, 가입된 국가 이외의 국가에서 구입 또는 비공식적으로 수입된 상품을 가입된 국가에서 판매할 수 없다.

SECTION 7

기타 SA 준수사항

7.1 부당한 강요 또는 허위사실 유포 금지

가. SA는 시크릿 또는 임직원에 대하여 부당한 강요, 협박, 희롱, 비방하거나 허위사실

등을 유포하여서는 안 된다.

- 나. SA는 부정확 목적으로 타사에 대한 비방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서는 안 된다.
다. SA는 서로 존중하여야 하며, 강요, 비방, 모욕, 유언비어, 허위사실을 유포 하여서는 안 된다.

7.2 업무방해 금지

- 가. SA는 외부기관에 민원을 접수하겠다고하거나 언론사에 고발하겠다는 내용으로 시크릿을 협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나. SA는 시크릿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사법기관 등에 신고하는 등 대외기관에 민원을 야기하여 영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다. SA는 시크릿이 허락하지 않는 단계를 개설하여 시크릿의 명예 또는 신용을 훼손하거나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7.3 시크릿 관계자 접촉 금지

SA는 시크릿의 거래처, 공급자, 고문, 컨설턴트 등과 시크릿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개별적으로 접촉하여서는 안 된다.

7.4 권한없이 시크릿을 대표하는 행위

- 가. SA는 본인 및 이해관계자를 통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다음과 같이 시크릿을 대표·대리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 ① 시크릿 이름, 상표, 상호 또는 저작물의 가입 및 보유
 - ② 시크릿의 이름과 상표, 상호 또는 저작물을 사용하는 URL의 가입
 - ③ 시크릿의 상품 또는 사업 모델에 대한 상품가입 또는 승인, 인증 등
 - ④ 시크릿을 대표한 어떠한 종류의 비즈니스 활동, 정부와의 접촉 등
 - ⑤ 시크릿의 전화번호나 주소, 직함 등을 명함이나 개인홍보물에 표기하는 행위 등
 - ⑥ 시크릿이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사무실, 매장, 센터, SNS 등의 운영
 - ⑦ 시크릿의 권리를 침해하는 기타 행위 등
- 나. SA 및 이해관계자가 상기행위를 함으로써 시크릿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 SA 및 이해관계자가 해당 규정을 위반하여 권리사항을 가입, 취득한 경우 이를 시크릿에 즉각적으로 양도하여야 한다.
라. SA는 SA의 대출 서류, 정부 양식, 재직증명서, 실업급여 신청서 등 기타 어떠한 서류에도 시크릿을 SA의 고용주 명의로 기재하거나 소개할 수 없다.

7.5 사행적 판매원 확장 행위

- 가. SA 및 이해관계자는 판매원을 모집하기 위한 것이라는 목적을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하고 취업·부업·아르바이트 등의 일자리제공, 설명회, 교육회 등의 거짓 명목을 내세우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나. SA 및 이해관계자는 SA가입 자격이 없는 자를 가입시키거나 특정인을 당사자의 동의없이 하위판매원으로 가입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7.6 반품방해 금지

가. 타인이 구매한 제품의 배송지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품을 전달하지 않고 보관

또는 인수하여서는 안 된다.

- 나. 신규회원의 제품을 사용방법 설명, 전달식 등의 사유로 구매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 개봉, 훼손하여서는 안 된다.

7.7 비밀공개 금지

누구든지 시크릿의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영업상의 비밀을 직·간접적으로 공개하면 안 된다.

7.8 품위 및 명성 유지

SA는 본인의 직급에 따른 활동 및 품위 유지를 하여야 한다. 시크릿은 SA의 활동에 대하여 시크릿 및 다른 SA의 이미지와 명성의 훼손 여부 및 본 회원활동 법규와 대한민국 법 위반 여부에 대하여 판단할 권한이 있으며, 회원 활동 법규에 따른 제재를 할 수 있다.

7.9 공식행사 규정 준수

SA는 컨벤션, 리더십세미나 등의 시크릿과 관련한 각종 공식행사 참여시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SA가 미준수시 시크릿은 회원 활동 법규에 따른 제재를 할 수 있다.

SECTION 8

계약 해지

8.1. 자발적 계약해지

SA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탈퇴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고객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8.2. 비자발적 계약해지

- 가. 시크릿은 SA가 회원 활동법규를 위반하는 경우 징계규정에 의해 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
나. 시크릿은 SA가 비활동 6개월이 경과한 경우 SA자격을 해지하고 우대고객으로 전환한다.

8.3 계약해지의 효과

- 가. 계약이 해지된 SA는 SA로서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상실한다. 이때 SA는 시크릿 제품과 서비스를 판매할 권리 및 자신이 운영했던 하위조직 또는 그 조직에 의해 창출된 매출에서 기인한 수당 또는 보너스에 대해 아무런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나. 계약이 해지된 SA는 일체의 SA 활동을 해서는 안 되며 시크릿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 계약이 해지된 SA는 계약해지전 자신이 온전히 활동적이었던 마지막 수당지급 기간에 대한 수당과 보너스만을 받게 된다.(프로모션처럼 별도 명시된 규정이 있을 시 제외).
라. 시크릿은 계약이 해지된 SA에게 채권이 있는 경우 미지급수당에서 상계하거나 법적 조치 등을 통한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 마. 계약이 해지된 SA의 후원자의 지위는 직상위 SA에게 인정된다. 단 이에 대하여 분쟁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와 관련된 사항의 처리는 전적으로 시크릿의 결정에 따른다.
- 바. SA 계약이 해지되거나 승계자 없이 사망한 경우 이와 관련된 사항의 처리는 전적으로 시크릿의 결정에 따른다.
- 사. 계약이 해지된 SA가 SA 활동 중 취득한 영업비밀을 이용하여 유인행위, 허위사실 유포, 불법행위 등을 함으로써 시크릿에 피해를 끼칠 경우 시크릿은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SECTION 9

징계

9.1 징계의 정의

징계란 SA가 방문판매법 또는 회원 활동 법규를 위반한 경우 SA에게 부과되는 일체의 제재를 의미한다.

9.2 징계의 종류 및 효력

가. 직권해지

■ 직권해지 사유

- ① 방문판매법/회원 활동 법규 위반으로 당사에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되는 경우
- ② SA가 방문판매법/회원 활동 법규를 위반하였고 그러한 행위를 시정할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요청한 기간 이내에 정정하지 않거나, 반복하여 위반하는 경우
- ③ 시크릿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 등의 사유로 시크릿 또는 다른 SA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
- ④ 시크릿 또는 다른 SA의 정상적인 영업을 방해하는 경우
- ⑤ 징계기간 중에 있는 SA가 방문판매법/회원 활동 법규를 위반한 경우
- ⑥ SA 가입신청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자격이 없음이 확인된 경우

■ 직권해지 효력

- ① 직권해지 된 SA는 SA로서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상실한다.
- ② 직권해지 된 SA에 대한 사항은 SECTION 8(계약해지) 규정에 따른다.

나. 자격정지

■ 자격정지 사유

- ① 방문판매법/회원 활동 법규 위반으로 자격정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② SA가 특별한 사유 없이 후원활동을 하지 않고 상당기간 불로소득을 편취하는 경우
- ###### ■ 자격정지 효력
- ① 자격정지 기간 동안에는 마케팅플랜에 따른 모든 수당이 지급되지 않으며 자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 ② 자격이 정지된 SA는 시크릿의 공식행사의 초대 및 참석이 제한될 수 있다.
 - ③ 자격이 정지된 SA는 정지 기간 동안 시크릿 제품을 소개 또는 판매하거나 다른 SA를 모집 또는 후원하는 것을 포함하여 SA로서의 어떠한 사업 행위도 할 수 없다.

④ 자격이 정지된 SA는 시크릿과 관련된 모든 인터넷 사이트 접속을 포함하여 시크릿이 제공하는 어떠한 SA 서비스도 이용할 수 없다.

■ 자격정지 기간 종료

- ① 자격정지 기간이 종료되면 시크릿은 SA의 자격을 회복시킨다.
- ② 자격정지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재차 방문판매법/회원 활동 법규를 위반하거나 위반의 우려가 있는 경우, 시크릿은 추가적인 자격정지 조치를 취하거나 해당 SA의 자격을 해지할 수 있다.

다. 자격제한

■ 자격제한 사유

- ① 방문판매법/SA 활동법규 위반으로 자격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② 9.7.다 규정에 의해 시정조치가 긴급을 요하는 경우 또는 심각한 위반이 우려되는 사안의 경우
- ###### ■ 자격제한 효력
- 시크릿은 SA에게 다음과 같은 제한을 할 수 있다.

- ① 제품구매 제한
 - ② 후원 수당지급 제한
 - ③ 프로모션 참가자격 또는 혜택 제한
 - ④ 시크릿행사 참가 금지
 - ⑤ 직급불인정 및 승급취소
 - ⑥ 마이오피스 이용 금지
 - ⑦ 오토신 해지
 - ⑧ ABC센터 출입 금지
- ###### ■ 자격제한 기간 종료
- ① 자격제한 기간이 종료되면 시크릿은 SA의 자격을 회복시킨다.
 - ② 자격제한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재차 방문판매법/회원 활동 법규를 위반하거나 위반의 우려가 있는 경우, 시크릿은 추가적인 자격제한 조치를 취하거나 해당 SA의 자격을 정지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라. 경고

■ 경고 사유

- 방문판매법/회원 활동 법규의 경미한 사항을 위반하였거나, 재발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 ###### ■ 경고 효력
- 경고조치 이후 재차 방문판매법/회원 활동 법규를 위반하거나 위반의 우려가 있는 경우 추가적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마. 기타

- ① 시크릿은 규정을 위반한 SA에 대해 적절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전적인 권한을 가진다.
- ② 시크릿이 본 회원 활동 법규와 관련된 SA의 위반행위, 의무 불이행 또는 과실에 대하여 제재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추후 동일한 위반행위, 의무 불이행 또는 과실을 용납하거나 동일하게 취급할 것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 ③ 본 회원 활동법규와 관련된 모든 통지, 요구사항 및 기타 서류는 시크릿 본사로 우송한다. 시크릿이 SA에게 발송하는 모든 서류는 해당 SA가 시크릿에 가입한 주소로 발송된다.

9.3 징계위원회 설치 및 구성

- 가. 시크릿은 방문판매법/회원 활동 법규 위반자에 관한 징계를 결정하기 위하여 징계위원회를 둔다.
- 나. 징계위원회는 시크릿의 대표이사가 임명하는 위원장과 위원(본부장급 이상), 간사(준법부 부서장)으로 구성된다. 다만, 별도의 지정이 없는 경우 대표이사가 위원장이 된다.

9.4 징계위원회 회의

- 가. 시크릿 준법부서는 방문판매법/회원 활동 법규 위반자에 대해 진상을 파악한 후 징계위원회에 징계보고서를 제출한다.
- 나. 준법부서의 안건 회부 시 징계위원회 회의가 소집되며,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되어 징계위원회 회의를 주관한다.
- 다. SA가 방문판매법/SA활동법규를 위반시 위반 행위의 종류, 위반의 정도, 피해 여부, 피해 회복 여부, 개선 노력 등을 고려하여 9.2(징계의 종류 및 효력) 규정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9.5 위반사실 조사

- 가. SA가 방문판매법/회원 활동 법규를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시크릿 준법부서에 알려야 하며, 시크릿은 그 위반사실에 대해 조사할 수 있다.
- 나. 시크릿은 방문판매법/회원 활동 법규의 위반 가능성이 있는 경우 관련자에게 소명자료 제출 또는 출석을 요청할 수 있다.
- 다. SA 및 관련자는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하며 시일내에 응답하지 않거나 허위 또는 불성실한 답변할 경우, 시크릿은 해당 SA에 대하여 징계조치 할 수 있다.
- 라. 위반이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경우, 시크릿은 이에 대한 조사 및 조치를 거부할 수 있다.

9.6 징계의결

- 가. 징계의결 기간은 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 요구를 받았을 때 그 징계보고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단, 사안에 따라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나. 징계의결은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한다.
- 다. 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 대상자의 행위사실, SA 활동, 공적, 징계요구 내용, 기타 정상을 참작한다.

9.7 집행 및 통지

- 가. 시크릿은 징계위원회의 결정사항(징계사유 및 처분 등)을 해당 SA에게 서면(또는 전자우편, 문자메시지)으로 통보한다.
- 나. 징계처분된 SA와 징계결과는 각 센터 및 온라인상에 공고할 수 있다.
- 다. SA의 방문판매법/SA 활동법규 위반에 대한 시정 조치가 긴급하거나 심각한 사안의 경우, 시크릿은 해당 SA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이라도 즉각적으로 자격제한 이상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9.8 재심의

- 가. 징계조치를 받은 SA가 시크릿의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를 수령한 후 7일 이내에 시크릿 준법부서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 나. 재심은 1회에 한하며 최소 2주이상 소요될 수 있고, 중대하며 명백한 위반사안의 경우 시크릿은 재심의를 거부할 수 있다.

9.9 징계 권한

시크릿은 방문판매법/회원 활동 법규 위반에 대해 심의부터 집행까지 전적인 권한을 가지며 상황에 따라 징계여부 및 정도에 대하여 결정할 수 있다.

SECTION 10

일반규정

10.1 적용 법규 및 관할

본 회원 활동 법규는 한국 내에서 시행중인 실정법에 따라 집행되고 해석되며 시크릿과 SA간의 분쟁시 대한민국의 법률을 적용 받으며, 관할은 민사소송법의 관계 규정을 따른다.

보상플랜

시크릿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다양한 방법

- 소매 판매 ■ 다이렉트 보너스 ■ 우대고객 보너스 ■ 팀 커미션
- 리더십 체크 매치 보너스 ■ 승급보너스 ■ 드라이브 유어 드림(DYD)보너스

1. 소매 판매

에이전트는 소비자에게 제품을 판매할 때마다 에이전트 가격과 소비자가격의 차액인 소매이익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2. 다이렉트 보너스

본인을 다이렉트 보너스 추천인으로 지정한 에이전트 및 우대고객 구매금액의 5%를 지급

구분	내용
자격 요건	액티브 에이전트 이상
보너스 금액	*구매 금액의 5%
보너스 지급 시기	**매주 정산 후 해당 주차 수당 지급일에 지급

* 구매 금액이란?

에이전트의 구매 금액 + 우대고객의 구매 금액

- ※ 하이퍼마켓, 회사 지정 일부 품목, 배송료 등은 다이렉트 보너스 지급 대상에서 제외
- ※ SDK 회원 및 구매 매출에 한함

** 지급 기준

다이렉트 보너스 금액 1만원 이상 누적 시 해당 주차 수당 지급일에 지급

3. 우대고객 보너스

우대고객 보너스는 본인이 추천한 우대고객의 볼륨에 대하여 계산됩니다.

구분	변경
자격 요건	액티브 에이전트 이상
보너스 금액	지급 및 볼륨과 관계 없이 구매 금액의 5% (다이렉트 보너스로 지급)
볼륨 공유 방식	① 본인의 일반구매 액티브 조건(605V)에 우대고객 볼륨 전체 적용 ② 상위 업라인에 볼륨 전체공유 ③ 본인 CV기준 소실적으로 볼륨 전체 공유

* 우대고객은 사업 및 후원활동을 하지 않고, 자가 소비를 목적으로 시크릿이 제공하는 각종 제품을 구입하시는 분을 의미하며 구입하신 제품의 재판매 활동이나 후원활동은 하실 수 없습니다.

4. 팀 커미션

두 개의 레그 중, 소실적 볼륨의 450CV 배수의 실적에 대하여 최대 15%까지 보너스를 지급받습니다.

ACTIVE만 달성시	5% 지급
브론즈 직급 미만(ACTIVE & QUALIFIED 달성)	10% 지급
브론즈 직급 이상(ACTIVE & QUALIFIED 달성)	15% 지급

팀 커미션 매칭 수당은 900CV의 대실적 레그에 매칭되는 450CV의 소실적에 비례하여 지급됩니다. 바이너리 매칭 수당이 지급되면 해당 볼륨은 좌측 및 우측팀의 볼륨에서 차감됩니다. 또한 매칭으로 지급되지 않고 남은 볼륨은 다음 주차로 이월됩니다. 브론즈 이상 에이전트는 주당 최대 \$20,000의 소득을 올릴 수 있습니다.(브론즈 미만 주당 최대 소득 \$150) 1,000LV를 달성한 다음주차부터 본인의 유지볼륨을 제외한 초과분은 본인의 소실적 그룹볼륨에 적용됩니다.

* Active 미유지시 팀 커미션 계산을 위해 누적된 볼륨은 소멸됩니다.

5. 리더십 체크 매치 보너스

브론즈 이상 직급을 달성하게 되면 본인의 유급직급에 따라 추천계보상 발생하는 하위파트너의 팀 커미션에 대하여 최대 20%까지 보너스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브론즈	로열	실버	골드	플래티넘	루비	다이아몬드	블루 다이아몬드	레드 다이아몬드	크라운	크라운 로열
1세대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2세대			10%	10%	10%	10%	10%	10%	10%	10%	10%
3세대					10%	10%	10%	10%	10%	10%	10%
4세대							10%	10%	10%	10%	10%

*유급 직급별 주 최대 금액

브론즈: \$300 / 로열: \$500 / 실버: \$1,000 / 골드: \$2,000 / 플래티넘: \$3,000 / 루비: \$5,000 / 다이아몬드 이상: 제한 없음

6. 승급보너스

직급을 달성하게 되면 더욱 많은 보너스를 받을 자격이 생기며, 최고 1백만불까지 지급 가능합니다.(단, 직급을 달성한 1회만 지급되며, 직급에 따라 3~5회 분할지급됩니다.)

*브론즈~레드다이아몬드 3회 분할지급 / *크라운~크라운로열 : 각각 4,5회 분할지급

직급	총 승급수당	1차 지급	2차 지급	3차 지급	4차 지급	5차 지급
브론즈	\$ 125	\$ 125				
로열	\$ 500	\$ 500				
실버	\$ 1,000	\$ 1,000				
골드	\$ 1,500	\$ 1,500				
플래티넘	\$ 4,000	\$ 2,000	\$ 2,000			
루비	\$ 5,000	\$ 2,500	\$ 2,500			
다이아몬드	\$ 8,000	\$ 4,000	\$ 4,000			
블루 다이아몬드	\$ 50,000	\$ 20,000	\$ 15,000	\$ 15,000		
레드 다이아몬드	\$ 150,000	\$ 60,000	\$ 45,000	\$ 45,000		
크라운	\$ 300,000	\$ 75,000	\$ 75,000	\$ 75,000	\$ 75,000	
크라운 로열	\$ 1,000,000	\$ 200,000	\$ 200,000	\$ 200,000	\$ 200,000	\$ 200,000

* 승급 수당은 최초 직급 달성시 1차분이 지급되며, 2~5차분의 지급시기는 최초 승급이후 4주차가 지나야 하며, 재승급 달성 시 14주 후 수당 지급일에 지급됩니다.

* 각 지급조건을 달성한 주 이후 지급이 확정되는 해당주차까지 지속적으로 Active를 유지하지 못할 경우, 분할 지급되는 승급보너스는 소멸될 수 있습니다.

7. 드라이브 유어 드림(DYD)보너스

드라이브 유어 드림(DYD) 보너스는 본인이 최초 로열 에이전트 이상의 직급을 달성한 주부터 연속된 4주 기간 동안 로열 에이전트 이상의 직급을 유지할 경우 발생합니다.

* 드라이브 유어 드림(DYD) 보너스는 4주 단위 싸이클에 의해 계산됩니다.

직급	드라이브 유어 드림
로열	\$ 300
실버	\$ 600
골드	\$ 800
플래티넘	\$ 1,200
루비	\$ 1,400
다이아몬드	\$ 1,600
블루 다이아몬드	\$ 2,000
레드 다이아몬드	\$ 3,000
크라운	\$ 4,000
크라운 로열	\$ 6,000

8. 보너스 정산기간과 지급시기

8.1 보너스 정산기간

주간 정산되는 보너스 정산은 미국 시간을 기준으로 책정되고, 한국시간 기준 주마감 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서머타임 실시 중 주마감 시간 : (03월 둘째주 ~ 11월 첫째주) 매주 화요일 오후 4시
- 서머타임 해제 중 주마감 시간 : (11월 둘째주 ~ 03월 첫째주) 매주 화요일 오후 5시

8.2 보너스 지급시기

매주 정산되어 발생한 보너스는 발생주로부터 3주 후 목요일에 지급됩니다.

* 주민번호 또는 본인실명의 은행계좌번호 오류 가입시 수당지급이 보류 될 수 있으며, 당사 고객센터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02-2222-2900)

8.3 보너스 캡(CAP)

방문판매법에 따라 법정수당지급율(35%) 초과시 지급 수당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시크릿다이렉트코리아 직급 체계

직급	4주 합산 볼륨 좌/우	추천계보상 하위회원 유급 직급(좌/우)
브론즈	2,000 BV / 2,000 BV	
로열	5,000 BV / 5,000 BV	
실버	8,000 BV / 8,000 BV	브론즈/브론즈
골드	14,000 BV / 14,000 BV	로열/로열
플래티넘	20,000 BV / 20,000 BV	실버/실버
루비	40,000 BV / 40,000 BV	골드/골드
다이아몬드	80,000 BV / 80,000 BV	플래티넘/플래티넘
블루 다이아몬드	200,000 BV / 200,000 BV	루비/루비
레드 다이아몬드	400,000 BV / 400,000 BV	다이아몬드/다이아몬드
크라운	800,000 BV / 800,000 BV	블루 다이아몬드/블루 다이아몬드
크라운 로열	2,000,000 BV / 2,000,000 BV	레드 다이아몬드/레드 다이아몬드

시크릿다이렉트코리아의 직급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위 표에서의 조건과 LV 조건 ①또는 ②를 충족하시면 됩니다.

※ LV 조건 충족 방법

- ① 본인 1,000LV 이상
- ② 본인 LV + 본인 다이렉트 보너스 추천계보 LV 합산이 5,000LV 이상

볼륨은 연속된 4주간의 신규 합산 볼륨을 의미하며 직급을 승급/유지하기 위해서는 요건을 충족한 활동적인 경우에 가능합니다.

■ ACTIVE(활동적)

에이전트가 지난 4주(현재 주 및 지난 3주)동안

- ① 오토십을 통한 구매 BV가 40BV이상인 경우
- ②(본인의 구매볼륨의 합) + (신규 직추천한 에이전트의 구매볼륨의 합)
+ (본인을 다이렉트 추천인으로 지정한 우대고객 볼륨의 합)이 60BV 이상일 경우
- ③ 본인을 다이렉트 추천인으로 지정한 우대고객 구매금액의 4주 합산이 20만원 이상일 경우

■ QUALIFIED(요건충족)

본인이 활동적이며 본인 하위에 활동적인 직추천 에이전트를 좌우측 각각 1명씩 보유했을 때 요건충족이라고 합니다.

■ LV(LIFETIME VOLUME, 평생누적볼륨)

신규 가입 후 해당 주차까지 개인이 구매한 볼륨

※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 마이오피스 > 트레이닝 > 교육영상 > 보상플랜 교육영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에이전트 준수사항

시크릿 에이전트는 본 수첩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방문판매 등에 관한법률",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중 다단계판매원과 관련된 모든 조항을 필히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시크릿다이렉트 코리아는 시크릿다이렉트가 제시한 방침 및 절차와 윤리강령에 대한 성실한 이행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관련 규정에 대한 위반 사례에 대해서 당사는 그 경중을 따져 엄격한 제재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가. 다단계판매원의 가입 및 탈퇴(방판매법 제 22조)

1. 다단계판매업자는 다단계판매원 가입 또는 자격유지의 조건으로 과다한 재화 등의 구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준 이상의 부담을 지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다단계판매자는 다단계판매원에게 일정수의 하위판매원을 모집하도록 의무를 지게 하거나, 특정인을 그 특정인의 동의없이 자신의 하위판매원으로 가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다단계판매업자는 다단계판매원이 제 15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때에는 당해 다단계판매원을 탈퇴시켜야 한다.
4. 다단계판매업자는 언제든지 다단계판매원에게 탈퇴의사를 표시하고 탈퇴할 수 있으며, 다단계판매업자는 다단계판매원의 탈퇴에 조건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5. 다단계판매업자는 탈퇴한 다단계판매원의 판매행위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판매원 수첩의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계약체결전의 정보제공 및 계약체결에 따른 교부의무(방판매법 제 16조)

1. 다단계판매자 등은 재화 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소비자가 계약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 1) 다단계판매업자 등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상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 2) 다단계판매원 등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 3) 재화 등의 명칭, 종류 및 내용
 - 4) 재화 등의 가격과 그 지급 방법 및 시기
 - 5) 재화 등의 공급방법 및 시기
 - 6) 청약의 철회 및 계약의 해제(이하 "청약 철회 등"이라 한다)의 기한, 행사방법, 효과에 관한 사항 및 청약 철회 등의 권리행사에 필요한 사실
 - 7) 재화 등의 교환, 반품, 수리보증 및 그 대금 환불의 조건과 절차
 - 8) 전자매체로 공급이 가능한 재화 등의 설치, 전송 등과 관련하여 요구되는 기술적 사항
 - 9) 소비자피해보상, 재화 등에 대한 불만 및 소비자과 사업자 사이의 분쟁처리에 관한 사항
 - 10) 거래에 관한 약관
 - 11) 기타 소비자의 구매 여부 판단에 영향을 주는 거래조건 또는 소비자피해구제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2. 다단계판매자 등은 재화 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제 1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3. 다단계판매자 등은 재화 등의 계약을 미성년자와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못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고지하여야 한다.
4. 다단계판매업자 등은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비자에게 표시 또는 고지한 거래조건을 신의에 좇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5. 다단계판매원은 제품의 소매 판매 이전에 방판매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소비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소매영수증에는 전술한 고지사항이 기재되어있다.

다. 청약의 철회와 철회권 행사의 효과(방판매법 제 17조 및 제 18조)

소비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방문판매자 등의 의사에 반하여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청약 철회 등을 할 수 없다.

1. 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의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다만, 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를 제외한다.
2. 소비자의 재화 등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그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3.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4. 복제가 가능한 재화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5. 그밖에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다단계판매원의 금지행위(방판매법 제 23조/제 24조)

제23조(금지행위)

1. 다단계판매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 1) 재화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강요하거나 청약 철회 또는 계약 해지를 방해할 목적으로 상대방을 위협하는 행위
 - 2)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대방과의 거래를 유도하거나 청약 철회 또는 계약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또는 재화등의 가격·품질 등에 대하여 거짓 사실을 알리거나 실제보다도 현저히 우량하거나 유리한 것으로 오인시킬 수 있는 행위
 - 3) 청약 철회등이나 계약 해지를 방해할 목적으로 주소·전화번호 등을 변경하는 행위
 - 4) 분쟁이나 불만 처리에 필요한 인력 또는 설비가 부족한 상태를 상당 기간 방치하여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 5) 상대방의 청약이 없는데도 일방적으로 재화등을 공급하고 재화등의 대금을 청구하는 등 상대방에게 재화등을 강제로 판매하거나 하위판매원에게 재화등을 판매하는 행위
 - 6) 소비자가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의사가 없음을 밝혔는데도 전화, 팩스, 컴퓨터통신 등을 통하여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도록 강요하는 행위
 - 7) 다단계판매업자에게 고용되지 아니한 다단계판매원을 다단계판매업자에게 고용된 사람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다단계판매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사람을 다단계판매원으로 활동하게 하는 행위
 - 8) 제37조에 따른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영업하는 행위
 - 9) 상대방에게 판매하는 개별 재화등의 가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도록 정하여 판매하는 행위

- 10) 본인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거나 허락받은 범위를 넘어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재화등의 배송 등 소비자와의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나. 재화등의 거래에 따른 대금을 정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다. 도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본인임을 확인할 때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라. 법률의 규정 또는 법률에 따라 필요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 11) 단단계판매조직 및 단단계판매원의 지위를 양도·양수하는 행위. 다만, 단단계판매원의 지위를 상속하는 경우 또는 사업의 양도·양수·합병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단단계판매업자는 단단계판매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금지행위를 하도록 교사(敎唆)하거나 방조(幫助)하여서는 안된다.
3.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 위반행위의 방지 및 소비자피해의 예방을 위하여 단단계판매자가 지켜야 할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24조(사행적 판매원 확장행위 등의 금지)

1. 누구든지 단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 1) 재화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하거나 재화등의 거래를 가칭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가. 판매원에게 재화등을 그 취득가격이나 시장가격보다 10배 이상과 같이 현저히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면서 후원 수당을 지급하는 행위
 - 나. 판매원과 재화등의 판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에 상당하는 재화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공급하지 아니하면서 후원 수당을 지급하는 행위
 - 다. 그 밖에 판매업자의 재화등의 공급능력, 소비자에 대한 재화등의 공급실적, 판매업자와 소비자 사이의 재화등의 공급계약이나 판매계약, 후원 수당의 지급조건 등에 비추어 그 거래의 실질이 사실상 금전거래인 행위
 - 2) 판매원 또는 판매원이 되려는 자에게 하위판매원 모집 자체에 대하여 경제적 이익을 지급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후원 수당 외의 경제적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
 - 3) 제20조제3항(제29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위반되는 행위 수당의 지급을 약속하여 판매원을 모집하거나 가입을 권유하는 행위
 - 4) 판매원 또는 판매원이 되려는 자에게 가입비, 판매 보조 물품, 개인 할당 판매액, 교육비 등 그 명칭이나 형태와 상관없이 10만원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을 초과한 비용 또는 그 밖의 금품을 징수하는 등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
 - 5) 판매원에 대하여 상품권² 그 명칭이나 형태와 상관없이 발행자가 일정한 금액이나 재화등의 수량이 기재된 무기명증표를 발행하고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칭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발행자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를 기재된 내용에 따라 발행자등으로부터 재화등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판매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 가. 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판매한 상품권을 다시 매입하거나 다른 자로 하여금 매입하도록 하는 행위

- 나. 발행자등의 재화등의 공급능력, 소비자에 대한 재화등의 공급실적, 상품권의 발행규모 등에 비추어 그 실질이 재화등의 거래를 위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수준의 후원 수당을 지급하는 행위
 - 6) 사회적인 관계 등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강요하거나 재화등을 구매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 7) 판매원 또는 판매원이 되려는 사람에게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교육·합숙 등을 강요하는 행위
 - 8) 판매원을 모집하기 위한 것이라는 목적을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하고 취업·부업 알선, 설명회, 교육회 등을 거짓명목으로 내세워 유인하는 행위
2. 단단계판매업자는 단단계판매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금지행위를 하도록 교사하거나 방조하여서는 안된다.

마. 하위판매원의 모집 및 후원에 관한 사항

시크릿에이전트는 소매활동과 함께 사업활동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시크릿다이렉트 사업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새로운 에이전트를 교육, 가입시키는 자발적인 행위를 후원이라 하며, 모집할 신규 에이전트의 숫자를 정하는 등 후원에 관한 어떠한 강제조항도 없습니다.

단단계 판매에 관한 해설 자료(시크릿다이렉트코리아)

본 해설자료는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18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정하는 단단계판매에 관한 해설자료입니다.

1. 단단계판매란?

- 1) 단단계판매란 제조업자→도매업자→소매업자→소비자와 같은 일반적인 유통경로가 아니라 단단계판매업자의 상품을 판매하는 판매원이 특정한 하위판매원으로 모집하는 과정이 3단계 이상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판매조직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방식입니다.
- 2) 단단계판매는 판매원 가입이 단계적으로 확산되며 직접적인 대인판매, 연고판매에 의존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 3) 사회적 물의를 빚었던 피라미드판매는 상품가격을 품질에 비해 고가로 책정하고 판매원이 되고자 하는 자에게 부당하게 금품을 요구하며, 판매원에게 상품구매나 하위판매원 모집을 강요하는 등 판매원의 수입이 주로 하위판매원 모집 자체에서 발생하도록 함으로써 사행성을 갖는 폐해가 있었습니다.
- 4) 정부는 단단계판매가 사행성과 소비자피해를 야기하지 않도록 방문판매등에 관한법률을 시행하고 있으며 동법을 위반하는 경우 그에 상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단단계판매원이 되려는 권유를 받았을 때

단단계판매원이 되려는 권유를 받았을 때 어떤 단단계판매조직에 단단계판매원으로 가입하라는 권유를 받았을 때에는 먼저 다음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1) 판매원으로 가입하기 이전에 자신이 가입하려는 회사가 방문판매등에 관한법률에 의해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 도지사에게 가입한 업체인지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의심스러운 점이 있으면 일단 가입을 보류하시고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

도(해당과)·사업자단체·소비자단체 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2) 다단계판매원이 되고자 할 때에는 우선 그 회사의 취급상품을 면밀히 검토하여 판매원으로서 활동하기에 적합한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단계판매는 원래 점포도 없고 광고도 하지 않으므로 취급상품의 품질 및 가격이 충분한 경쟁력을 가져야 합니다.
- 3) 다단계판매원으로 가입하려 할 때에는 후원 수당의 지급기준과 다단계판매원에 게 지급되는 후원 수당의 평균 및 그 분포를 확인한 후 예상되는 소득기회를 고려하여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 4) 다단계판매원은 탈퇴의사를 표시한 후 언제든지 다단계판매조직에서 탈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단계판매업자는 탈퇴에 대하여 어떠한 조건도 부과할 수 없습니다.

3. 다단계판매업자로부터 재화 등을 구매 또는 판매할 때

- 1) 다단계판매업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단계판매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이하"재화등"이라 한다)을 구입할 경우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이 체결되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그 증서를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청약 철회 또는 계약해제(이하"청약 철회등"이라 한다)를 하고 반품을 하였음에도 다단계판매업자가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하지 않을 경우 또는 재화등을 공급하지 않을 경우에 보험회사로부터 보험약안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화등의 대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2) 다단계판매원은 구입 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단계판매업자에 청약 철회등을 하고 재화등의대금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공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청약 철회등을 한 경우에는 대금 전액
 - 공급일로부터 1개월 경과후 2개월이내에 청약 철회등을 한 경우에는 대금의 5 퍼센트를 공제한 금액이상으로서 약정한 금액
 - 공급일로부터 2개월 경과후 3개월이내에 청약 철회등을 한 경우에는 대금의 7 퍼센트를 공제한 금액으로서 약정한 금액
 - 3) 다단계판매업자에게 청약 철회등을 하고 상품을 환불하면 3영업일 이내에 상품대금을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다단계판매업자가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연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4) 한편, 다단계판매원이 소비자에게 물건을 판매한 때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당해 각 호에서 각각 정한 날을 말한다)로부터 14일 이내에 소비자가 청약 철회등을 할 경우 판매대금을 환불하여야 합니다.
 - 가. 계약을 체결한 때보다 상품의 인도 또는 용역의 제공이 늦게 이루어진 때에는 상품을 인도 받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날
 - 나. 계약서를 받지 아니하거나 다단계판매업자의 주소 등이 적혀 있지 아니한 계약서를 받은 경우 또는 다단계판매업자의 주소변경 등의 사유로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 철회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단계판매업자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다. 계약서에 청약 철회등에 관한 사항이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약 철회등을 할 수 있음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
- 라. 다단계판매업자가 청약 철회등을 방해한 경우에는 그 방해 행위가 중대한 날

4. 불법적 다단계판매조직이란?

다음 기업은 불법적 다단계판매조직에 해당됩니다. 만약 자신이 알고있는 어떤 다단계 판매조직이 다음에 해당된다면 즉시 시, 도, 공정거래위원회, 경찰관서, 사업자단체, 소비자단체 등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다단계판매업가입증 및 가입번호가 없거나 불명확하다.
- 2) 후원 수당 선정, 지급기준 등에 관한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다.
- 3) 다단계판매원가입증, 다단계판매원수첩 등을 교부하지 않거나 부실한 것을 교부한다.
- 4) 판매가격이 160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초과하는 고가상품을 판매한다.
- 5) 제품의 반품 및 환불규정이 명확하지 않거나 사실상 지켜지지 않는다.
- 6) 후원 수당비율이 지나치게 높다.
(판매원에 대한 재화등의 공급가격의 35%를 초과한다)
- 7) 폭력, 강압 기타 반강제적, 위협적인 수단으로 가입을 유도한다.
- 8) 가입비 명목으로 1만원 이상을 요구하거나 또는 판매원 가입조건으로 5만원 이상의 물건을 구입하게 한다.
- 9) 판매원에게 3만원 이상의 판매보조물품을 구매하도록 의무를 부과한다.
- 10) 가입시 고지한 후원 수당의 지급기준과는 달리 별도의 판매할당금액을 충족하여야 판매원자격을 유지하고 후원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 11) 사람을 가입시키는 행위만으로도 수입이 발생된다.
- 12) 사업장의 주소, 전화번호 등을 고의로 자주 변경한다.
- 13) 유사상품에 비하여 현저히 고가로 상품가격을 정하여 거래하거나 사실상 금전만을 거래한다.
- 14) 판매원 또는 판매원이 되려는 사람에게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교육, 합숙을 강요한다.
- 15) 판매원을 모집하기 위한 것이라는 목적을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하고 취업,부업 알선, 설명회, 교육회 등을 거짓 명목으로 내세워 유인한다.

과대, 과장 광고 금지 안내

1.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법률에서는 SA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1)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사실과 과대 또는 다르게 표시·광고하는 것
- 2) 기만적인 표시·광고: 사실을 은폐 또는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광고하는 것
- 3)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객관적인 기준이나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다른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상품이나 서비스 등과 비교하여 우수 또는 월등하다고 표시·광고하는 것
- 4) 비방적인 표시·광고: 객관적인 기준이나 근거 없이 다른 사업자등 또는 다른 사업자등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비방하거나 불리한 사실만을 표시·광고하는 것

2. 건강기능 식품에 관한법률

건강기능 식품에 관한법률에는 SA 건강기능식품을 판매 또는 판촉하기 위해서는 건강기능식품 교육을 이수한 후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신고를 하여야 하며, 다음에 해당 하는 거짓 · 과장 광고는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 1)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 · 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
- 2)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
- 3)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 4) 의약품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명칭(한의학의 처방명 포함)의 표시·광고

MEMO

SEACRET™

SEACRET™

시크릿다이렉트코리아(주)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 619, 제이비케이타워 3층~7층

고객지원부 TEL 02-2222-2900 FAX 02-2222-2929

www.secretdirect.kr

VER. 2007